

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, 영세율 적용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

1. 개요¹

청구법인은 외국법인(“쟁점외국법인”)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(“쟁점차명계좌”)로 수취하였습니다. 처분청은, 청구법인이 외화를 “직접 송금”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.

2. 결정의 요지

조세심판원은 거래의 실질로 볼 때 청구법인은 직접 송금받았다고 보았습니다.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서, 청구법인 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여 외환을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으니 청구법인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

¹ 조심 2026서186, 2026. 6. 5.

관련구성원

백제흠

대표변호사

02-316-4052

jhebaik@shinkim.com

정영민

선임공인회계사

02-316-7269

ymchung@shinkim.com

김병규

고문

02-316-4504

bkykim@shinkim.com

김병호

세무사

02-316-7959

bhkim@shinkim.com

윤근희

공인회계사

02-316-7222

kheyun@shinkim.com